성주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"안"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6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결정 목적

- 현재의 군청사 부지가 협소하여 증축 및 주차공간 확충이 어려운 실정으로 군청사 이용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군청부지 확장방안 모색이 필요함.
-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인 군청사의 확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, 협의 매수하여 건축법에 따라 증축하는 방법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으나,
- 군청사 증축(승강기 설치)등 당면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우선 청사 부지내에 있는 사유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결정 절차를 선행 추진함이 타당할 것임.

2. 결정 내용

- 내 용 : 성주군청 주변(주택 포함)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결정
- 위 치 :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성주군청 일원
- 면 적 : 8,550㎡(2,586평) --인근 대지 238㎡(72평)추가 편입
- 용도지역 : 제1종일반주거지역(현재)

3. 결정 사유

- 기존 군청사의 증축 등을 통한 군민의 이용편의 제공 및 군청사 부지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※ 덧붙임 : 성주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결정조서 1 부 .끝.

성주군계획시설(공공청사)결정조서

1. 군 계획시설 결정조서

1) 공공·문화체육시설

(가) 공공청사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2	성주군청	자치단체 청사	성주읍 경산리 283-1번지 일원	-	증) 8,550	8,550	-	

■ 결정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2	성주군청	· 공공청사 신설 A = 8,550㎡	기존 군청사의 증축을 통한 군민의 이용편의 제공 및 군청사부지의 계획적 관리 도모